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호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발 의 자 : 김호진 의원(1명)
찬 성 자 : 성흠제, 문병훈, 박기재, 이승미,
우형찬, 이은주, 신원철, 채유미,
오한아, 김춘례, 안광석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체된 일이 있었음. 이후 응급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.
- 현행 「도로교통법」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을 더욱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제5조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-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- ③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④ <u>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